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각국의 운영현황

본 협회 조사부

1. 서언

최근에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기업 내 자율준수체제인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 작성·운영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에는 최고경영자의 지시,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영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담은 매뉴얼, 교육훈련과 상담계획, 내부감사,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관련이 깊은 대기업의 경우 C·P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과 요인을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산업정책이 퇴조하고 시장경제원리가 강화됨으로써 공정거래법이 기업사회의 기본법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원리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업의 자기책임과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의식의 고양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등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는 세계 각국의 기업이 공통의 규칙에 따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도 포함되며, 이러한 공통의 규칙이 바로 독점금지법이다. 기업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국제카르텔에 대한 대응책으로 두 국가간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카르텔에 대한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반면에 이에 대한 과대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의 해외 상업활동에 따른 리스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최근에 선진각국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종전에는 시정명령이나 배제명령이 주류였으나 점차 과징금(벌과금) 부과는 물론 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위반기업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과 카르텔의 경우 형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반시 매스컴에 보도되어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줌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최근 선진국 일부에서 기업이 C·P를 운영하고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분명하거나 위반을 조기에 발견, 자체 시정의 노력이 있었다는 확증이 있는 경우 제재를 완화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초범이나 누범이나 또는 조사에의 협력 여부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에 차이를 두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Panasonic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EU위원회의 조사를 받는중 재빨리 C·P를 작성하여 판매대리점들에게 이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에 협력

함으로써 제재금을 감액받은 적이 있다.

다섯째, 일부 선진국의 경우 기업체 내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한때 “카르텔은 필요악” 또는 정부가 불가정책상 카르텔이나 재판제도를 유도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각국이 규제완화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적용 확대를 가져오고 이는 바로 공정거래법의 준수가 기업경영의 필수조건 중의 하나라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C·P는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C·P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였다. 다음은 우리 기업의 C·P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C·P 운영현황을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2. 미국

미국에서는 점차 독점금지정책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C·P는 Risk management의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반트러스트법 위반은 범죄로 취급되며 카르텔 위반은 범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C·P의 중요성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독점금지법에 대한 C·P의 내용과 질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즉 종전의 독점금지법 C·P가 종업원을 교육시키고 독점금지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최근의 C·P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대응책으로 뿐만이 아니라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대응책도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1993년에 Leniency Program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을 법무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일체의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게 하자, 카르텔 참가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Leniency Program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미국의 경우 Sentencing Guideline(중형가이드라인)은 종업원이 5000명 이상이면서 독점금지법 위반이 악성이면 벌점 +5라고 하는 평가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종업원이 1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벌점 +4). 따라서 종업원이 많은 기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적은 경우보다 무거운 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미국에서는 많은 대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게 유효한 독점금지법 C·P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 경우 양형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C·P를 운영하는 경우 당연히 감형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한 C·P의 존재와 이에 대한 적절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효한 C·P가 존재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종업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종업원에게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유효한 C·P로 인정된다. 특히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비교적 일찍 발전한 미국에서는 법무부에서 제정한 Sentencing Guideline(중형가이드라인)에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위반시 경감조치를 해줌으로써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효과를 갖추고 있다.

현재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기업의 예를 들면 Allied Signal Inc, Amoco 사, The BFGoodrich 사, Chevron, Columbia/Health Care 사, The Dow Chemical 사, General Electric 사, General Motors 사, Hogan & Hortson 사, IBM, ITT, Mobil 사,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사, Rohm and Haas 사,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사, United Technologies, Dupont 사 등이 있다.

특히 1991년에 연방정부에 의해 채택된 중형가이드라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을 공식화 하는데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해 주었다. 중형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기본모델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은 ①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기준과 절차의 확립, ② 이러한 기준과 절차의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개개인의 임무, ③ 불법행위에 관여한 개인들에 대한 정부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 ④ 종업원들이 보복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범죄적 행위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 ⑤ 적절한 훈련 메카니즘에 의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⑥ 미래의 유사한 위반 및 범죄행위에 대응하는 적절한 절차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무부에서 운용하는 기업을 위한 Leniency Policy와 개인들을 위한 Leniency Policy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HOGAN & HARTSON L.L.P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 모델은 ① 모든 종업원들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독점금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② 회사는 독점금지법상의 제재를 유발시키는 행동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③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종업원들은 그들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부하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며, ④ 회사의 종업원은 그 누구도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승인·용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며, ⑤ 과거, 현재, 미래의 행동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종업원은 반드시 법무부서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는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대한 정책 선언과 독점금지법에 대한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독점금지법에 대한 가이드에서는 주로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셔먼법 제1조에 대한 위협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죄는 당연위법으로 민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벌도 가하기 때문이다. 경쟁자와의 합의대상으로 가격고정, 시장분할, 집단 보이콧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독립적인 판단을 행할 것과 가능하면 경쟁자와의 회합자리는 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경쟁자로부터 직접 얻는 것을 금하고

있다.

경쟁자와의 수평적인 합의가 당연위법인 것과는 달리 공급업자와 고객들과의 수직적 합의는 반경쟁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한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합의는 회사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며 주로 특별한 계약(특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법무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배타적 거래와 차별취급,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점화 부분에서는 거래거절, 거래단절, 약탈적 가격, 이중적(도매와 소매) 유통구조 등이 문제화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UNITED TECHNOLOGIES 사의 독점금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은 ① 경쟁자와 가격에 관해 논의해서는 아니 되며, ② 경쟁자와 고객, 시장, 지역을 분할하지 말 것, ③ 고객의 재판매가격 통제를 시도하거나 합의하지 말 것, ④ 고객의 재판매행위 제한 시도를 하지 말 것, ⑤ 경쟁고객이 제공한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과 가격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말 것, ⑥ 우리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지 말 것, ⑦ 법무부서에 법률자문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준수편람들은 한결같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들을 독점금지법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업원들은 사업활동에 대한 적법성에 관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서나 자문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답을 받기까지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 국제적인 카르텔 사건에 대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국적기업의 경우 미국 독점금지법의 C·P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영업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미국, EC 등 일부 선진국의 독점금지법에 대한 C·P의 작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3. EU

EC에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독점금지법과는 별도로 C·P의 작성과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는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이 자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독점금지법의 운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점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C에서는 독점금지법 위반시 당해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의 10%까지 제재금이 EC위원회 재량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더구나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 수입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된다. 그러나 C·P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준수의

지가 있고 사내교육·훈련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재금의 상당액이 감액이 되는데 이 점도 C·P 운영 기업의 증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C·P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자 또는 임원의 이름으로 당해 기업의 독점금지법 준수 방침에 관한 선언 또는 서약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에는 당해 기업이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당해 산업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기업인지 소기업인지, 경쟁업자와의 접촉 여부, 당해 기업활동에 내포되어 있는 리스크, 판매와 구매 등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당해 산업의 성격 등을 명확하게 하고 만일 기업의 독점금지법 준수 방침에 반한 경우에는 기업의 징계절차에 따르게 된다는 뜻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해 기업의 C·P 담당위원회와 책임자, 훈련(트레이닝)방법의 설명, C·P의 평가방법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담당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기재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설명보다도 「Dos and Dont's」의 방법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담당자의 직책·영업, 구매, 제조, 기획, 라이선스 관계·등에 따라 경쟁업자, 고객, 구매업자, 라이선스 관계자, 사업자단체 등과 접촉하는 경우에 해도 좋은 것(Dos)과 해서는 안되는 것(Dont's)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물론 기업이나 업계에 따라 내용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경쟁업자와 얘기하는 경우, 가격, 인상시기, 할인, 리베이트, 공급조건, 구매조건, 비용, 이익률, 판매량의 배분, 구매처의 배분, 다른 사업자의 시장으로부터의 배제 등에 관하여 「Dos와 Dont's」의 리스트로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당해 기업이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가격이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거절행위, 고객, 경쟁업자, 공급업자 등의 차별취급행위, 거래품목과 관련성이 없는 상품을 끼워팔기하는 행위, 비용 이하의 판매행위, 기업의 충실도에 따른 리베이트 지불행위 등을 Dos와 Dont's로 나누어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앞에서 설명한 C·P의 예로서 Coudert Brothers Coppens Van Ommeslaghe & Faurès 법률사무소가 고객에게 작성해 준 간이 체크리스트를 참고가 되도록 게재하였다. 간이 독점금지법 체크리스트에는 ① 산업에 관한 검토사항 - 제품, 지역, 하청시장, 경쟁회사 및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유통수단, 고객, 공급업자, 참가자가 관여한 과거의 위반사건, ② 법인조직에 관한 검토사항 - 모회사 및 자회사, 정관, 권한의 한도, 제품 라인, ③ 주의를 요하는 관계사항에 관한 검토사항, a) 경쟁회사와의 관계 - 사업자단체의 기록, 매매 조건(가격 등)·공급업자 혹은 고객·시장 혹은 고객 분할·비용·경쟁회사 혹은 잠재적 경쟁회사의 배제에 관한 정보교류, 기타의 정보교류, b) 유통 - 유통구조의 검토, 기존의 계약, 재판가격·고객 또는 지역에 관한 배타성·다른 회원국에로의 수출 또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유통업자 및 판매점의 거래관행에 관한 정보교류 및 기타 내용에 대한 정보교류, c) 공급 - 기존 계약, 재판가격·배타성·공급업자에 의한 경쟁회사에의 판매·호

해거래 및 끼워팔기에 관한 정보교류, 소송과 관련된 사항, d)라이선스 - 기존의 라이선스, 라이선스에 의한 가격·고객 혹은 지역의 배타성·다른 회원국에로의 수출 혹은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라이선스와 라이선스간의 불경쟁 약속·라이선서의 특허 혹은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의 이의신고에 관한 정보교류, 소송과 관련된 사항, e)내부방침 - 가격 방침, 제품에 관한 방침, 확대방침 및 계획, 새로운 마케팅 및 가격전략 등이 수록되어 있다.

Dos(해도 좋은 것)과 Dont's(나쁜 것)의 예시로 ① 불이행한 상대방에게는 계약해제로 위협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이 때에는 필히 관리자와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행할 것, ② 판매점이 다른 EC회원국에 수출, 혹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계약해제 하겠다고 위협하여서는 아니 됨, ③ 현재 혹은 장래의 가격, 할인, 또는 기타의 다른 판매조건을 경쟁회사의 종업원과 이야기하여서는 아니 됨, ④ 경쟁회사의 종업원과 기존의 제품 혹은 신제품의 매출액에 대한 정보 또는 소문을 교환하여서는 아니 됨, ⑤ 전시 또는 사업자단체의 회의에서 가격의 동향, 신제품, 공급수준 또는 부족 수준 등 비밀정보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서는 아니 됨을 언급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의 경우도 독점금지법 C·P를 운영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 조사(1998년 1월에 공정취인협회가 상장기업 2,37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앙케이트에 회답한 1,020사 중 독점금지법 자율준수를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대처를 하고 있다고 회답한 기업(이하 「대처기업」이라 함)은 58%,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을 포함하면 71%에 다다른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처기업의 과반수는 독점금지법 준수에 책임을 지는 사내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독점금지법 준수에 대해 사장명의 등으로 사원 훈시, 통달을 행하고 있는 기업은 반수에도 못 미치는 등 전체적으로 C·P를 조직의 말단에까지 파급시키는 경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 공정취인협회에서 1991년 3월 업계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독점금지법 Compliance Program」을 발간 업계에 보급하여 크게 성공을 한 적이 있다.

한편 일본 공정취인협회 C·P 연구회에 의한 1999년 11월~12월 조사(대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함)를 보면 C·P 운영을 위한 사내체제와 이의 대처내용도 충실하고, C·P가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지원하에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해 C·P 준수를 위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전사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은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왜 이렇게 행동하여야만 하는가라는 정신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람은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임무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일본 매뉴얼은 실무 입문서라기보다는 독점금지법의 기본적인 방침을 서술하

고 자사가 이것을 도입하는 것을 선언한 계몽서라는 면이 강하다.

다음은 공정취인협회가 업종별로 작성해 놓은 C·P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자동차 제조회사의 C·P의 예를 보면 ① 사장의 준수의지 천명, ② 독점금지법의 개요, ③ 딜러와의 거래관계, ④ 부품제조사와의 구매거래 문제, ⑤ 경쟁제조사와의 관계, ⑥ 기타 문제(주식회사, 기업결합, 특허 등)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회사의 예를 보면 ① 자사 및 자사 제품 등을 부당하게 오인하게 표시하지 않을 것, ② 공평한 취급, ③ 상호 호혜거래를 꾀할 것, ④ 타사를 비방하지 않을 것, ⑤ 미발표제품의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⑥ 경쟁법에 대한 개설로 되어 있으며 판매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전 제조회사의 C·P를 예를 들면 제1장 「간접판매(도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① 재판매, ② 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 ③ 사업자단체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 ④ 우월적 지위남용, ⑤ 부당한 거래거절의 각 항목을 다루고 제2장은 「직접판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① 카르텔, ② 기만적 고객유인, ③ 부당염매를 다루고 제3장은 「간접판매, 직접판매 공통사항」으로서 ① 끼워팔기, ②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수록하고 있다. 이 역시 판매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독점금지법 C·P 가이드라인은 매뉴얼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① 관공서 입찰에 관한 모델·매뉴얼, ②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남용의 방지에 관한 모델·매뉴얼, ③ 제조업 일반의 모델·매뉴얼, ④ 전력회사의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행동지침 등의 모델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것이다. 개별기업이 매뉴얼을 작성할 때에는 관련 없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등 개별기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하게 된다.

공정취인협회는 C·P 보급활동을 위해 평소 준수 프로그램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에 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 협회는 1993년 6월부터 「독점금지법 준수 매뉴얼 관람장구」를 설치하여 회원사로부터 제공된 사례를 공람하고 있다. 현재 약 90여개 단체와 회사로부터 95개의 해설서와 매뉴얼이 전시되고 있다. 이들은 준수 프로그램으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기는 하지만 사례가 너무 오래된 것이고 법 개정 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것이 많다.

또한 동 협회는 준수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강습회를 개최하면서 수강자에게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공정취인」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동 협회 내에 교수와 변호사 및 회원사 20명으로 구성된 C·P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5. 우리 나라

우리 나라에서도 1994년 3월부터 삼성전자와 LG그룹 그리고 SK(주)와 자동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C·P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많은 대기업이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하고 있으며, 백화점업체와 건설업체 등에서도 일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우수 기업이라고 하여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포상하고 법 위반시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공정거래협회에서는 1996년 7월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준수편람 작성방안」을 발간하여 업계에 보급한 적이 있으며, 2000년 7월에 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내용을 일부 보완한 수정판을 업계에 보급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법을 자주 개정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요청을 수정·보완하여 업계에 보급하는데 노력하여 왔다. 협회에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삼성전자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하는데 지원하였으며, 이에 앞선 2월에는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을 지원하였다. 1995년에는 SK(주)와 포항제철, 대우자동차 등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는데 상담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C·P를 운영하는 주요 대기업을 보면 전기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가 가장 먼저 이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그 후 대우전자에서도 이를 도입하였고, 건설업계에서는 경남기업,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LG건설, 삼성물산, 신성, 고려산업개발 등의 기업에서 공정거래법 실무지침의 형태로 준수편람 등을 작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음식료업종에서는 롯데제과와 대상, 진로, 삼양사 백화점업에서는 신세계와 롯데, 현대, 뉴코아 등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용역에 의해 작성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을 운영하고 있다.

상기 준수편람들은 예를 들면 영업분야와 구매분야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위반사례와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수록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제1장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요」, 제2장 「공정거래법 준수지침」으로서 ① 고객 및 마케팅과의 관계에서 거래거절, 차별 취급, 판매상대방·판매지역 제한행위, ② 경쟁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부당공동행위, ③ 구매 및 공급업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④ 계열사간의 내부거래에서 부당내부거래, ⑤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 법규제 내용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형태는 주로 일반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Q&A 또는 체크리스트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에는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확립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천명되어 있다. 매뉴얼 자체도 일반적인 독점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각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 또는 위반되지 않는 사례를 설명하는 등 실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포함되고 있다. 특히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종업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도 있다. **공정**